



Assistant Attorney General  
950 Pennsylvania Ave, NW - RFK  
Washington, DC 20530

2022年3月31日

주 법무관 귀하,

미국 법무부(이하 '부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모든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연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존엄성 있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해당 청소년들이 성별 확인 관리를 받을 때를 포함하여, 이들의 성 정체성에 근거하여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본 서신은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비롯된 몇 가지 중요한 연방 헌법 및 법적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차별 문제에 취약하며, 자주 표적 위협, 법적 제한 및 성전환 반대 폭력의 희생자가 됩니다.<sup>1</sup> 본 부처,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연방 정부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인터섹스, 논바이너리 또는 기타 젠더 비순응적인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고<sup>2</sup> 연방 민권법 준수를 보장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부처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개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연방법을 조정 및 집행하는 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sup>3</sup>

<sup>1</sup> Michelle M. Johns et al., Ctrs. 질병 통제 및 예방, *고등학교 학생 간의 트랜스젠더 정체성 및 폭력 피해 경험, 물질 사용, 자살 위험 및 성행위 - 19 개 미국 및 대규모 도시 학교*, 2017, 이환율 및 사망률 주간 보고서 68 67-71 (2019) 등 참조, [https://www.cdc.gov/mmwr/volumes/68/wr/mm6803a3.htm?s\\_cid=mm6803a3\\_w](https://www.cdc.gov/mmwr/volumes/68/wr/mm6803a3.htm?s_cid=mm6803a3_w) (성전환 청소년이 시스젠더에 비해 폭력 피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됨)

<sup>2</sup> 집행 주문 번호 13,988, § 1, 86 Fed. Reg. 7023(2021 년 1 월 20 일) 등 참조, Pamela S. Karlan, 법무부 차관, Civ. Rts. Div., 미국 법무부, 각서, *Bostock v. Clayton County 사건 접수 1972 년 교육 수정안 제 9 호*(2021 년 3 월 26 일), <https://www.justice.gov/crt/page/file/1383026/download>

<sup>3</sup> 집행 주문 번호 12,250, § 1-201, 45 Fed. Reg. 72,995 (1980 년 11 월 2 일)

개인이 성별 확인 관리를 받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차별적 장벽을 세우는 것은 여러 연방법 차원의 보증을 수반합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적절하다고 해석되는 보살핌에 관해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주법 및 정책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및 정당한 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평등보호조항에서는 성별<sup>4</sup>에 따라 차별하는 법률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극히 설득력 있는' 정당성 없이는 그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sup>5</sup> 정부는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않고서는 트랜스젠더를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sup>6</sup>성전환자를 차별하는 주법이나 정책은 '충분히 중요한 정부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sup>7</sup>

법률이나 정책에서는 특별히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을 선별하여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 정부나 연방 기금 수급자가 성전환자가 주로 추구하는 의료의 종류를 범죄로 규정하거나 제한할 경우, '독단적 추정'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sup>8</sup> 예를 들어, 성별 확인 관리, 치료 또는 약물에 대한 금지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일 수 있으며, 이는 충분히 중요한 정부 이익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sup>4</sup> *Grimm v. Gloucester Cnty. Sch. Bd.*, 972 F.3d 586, 610-13 (4th Cir. 2020), 개정(2020년 8월 28일), *reh'g en banc denied*, 976 F.3d 399 (4th Cir. 2020), *cert. denied*, 2021 WL 2637992 (2021년 6월 28일), *Whitaker v. Kenosha Unified Sch. Dist. No. 1 Bd. of Educ.*, 858 F.3d 1034, 1051 (7th Cir. 2017), *cert. dismissed*, 138 S. Ct. 1260 (2018) 등 참조, Amicus Curie Supporting Plaintiff-Appellee로서 미국을 위한 개요, *Brandt v. Rutledge*, No. 18-13592 (8th Cir. 2022년 1월 21일), 전원 합의체 Amicus Curie Supporting Plaintiff-Appellees로서 미국을 위한 개요, *Adams v. School Board of St. John's County*, 제 18-13592호 (11th Cir. 2021년 11월 26일), Amicus Curie Supporting Plaintiffs-Appellees로서 미국을 위한 개요 역시 참조, *Corbitt v. Taylor*, No. 21-10486 (11th Cir. 2021년 8월 2일) 역시 참조

<sup>5</sup> *United States v. Virginia*, 518 U.S. 515, 531(1996) ('성별에 기반한 정부 조치를 옹호하려는 당사자들은 그 행동에 대해 '극히 설득력 있는 정당화'를 입증해야 한다') (*Mississippi Univ. for Women v. Hogan*, 458 U.S. 718, 724 (1982) 인용)

<sup>6</sup> *Bostock v. Clayton Cnty.*, 140 S. Ct., 1731, 1741 (2020).

<sup>7</sup> *Grimm*, 972 F.3d at 608 (*City of Cleburne v. Cleburne Living Ctr.*, 473 U.S. 432, 441 (1985) 인용(내부 인용 생략))

<sup>8</sup> *Bray v. Alexandria Women's Health Clinic*, 506 U.S. 263, 270 (1993) ('일부 활동은 비합리적인 비호감 대상일 수 있으며, 특정 계층이 독점 또는 지배적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계층에 대한 비호감 의도를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sup>9</sup> 이러한 정당화에 대한 부담은 '요구적'입니다.<sup>10</sup> 이러한 법률이나 정책은 '주장 목적'이 분류의 기초가 되는 '실제 목적'과 다를 경우 면밀한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sup>11</sup> 또한, 적법 절차 조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 조언을 구하고 따를' 권리를 보호합니다.<sup>12</sup> 성전환 청소년에 대한 성별 확인 관리가 적절할 뿐만 아니라 종종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의학회 내에서 잘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 정부는 그 권리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sup>13</sup>

이러한 헌법상의 보증뿐만 아니라, 연방 법에서는 연방 재정 지원의 수급자가 해당 자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차별 없는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담적정보험법 제 1557 조**<sup>14</sup>는 다양한 의료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포함한 사람들의 민권을 보호합니다.<sup>15</sup> 예를 들어, 개인의 성 정체성에 근거한 치료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제 1557 조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출생 시 할당된 성별이나 성 정체성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성별 확인 관리를 포함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제 1557 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sup>16</sup>

---

<sup>9</sup> *Virginia*, 518 U.S. - 533

<sup>10</sup> *Id.*

<sup>11</sup> *Miss. Univ.*, 458 U.S. - 730

<sup>12</sup> *Parham v. J.R.*, 442 U.S. 584, 602 (1979)

<sup>13</sup> *Brandt v. 참조 Rutledge*, 551 F. Supp. 3d 882, 891, 893 (E.D. Ark. 2021)

<sup>14</sup> 42 U.S.C. § 18116

<sup>15</sup> 부담적정보험법 제 1557 조 및 1972 년 교육개혁법 제 4 장의 해석 및 시행에 관한 통지 참조, 86 Fed Reg. 27,984 에서 전제 등 참조(2021 년 5 월 25 일)

<sup>16</sup> 미국 보건복지부, *성별 확인 관리, 민권 및 환자 사생활에 대한 고지 및 지침*(2022 년 3 월 2 일) 참조,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hhs-ocr-notice-and-guidance-gender-affirming-care.pdf>

- **1972년 교육개혁법 제 4장**<sup>17</sup>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을 운영하는 연방 재정 지원 수급자에 의한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sup>18</sup> 학생이 트랜스젠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수급자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접근을 거부, 제한 또는 방해하는 정책과 관행은 제 4장 위반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범죄 단속 및 길거리 치안법**<sup>19</sup>에서는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특정 법 집행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sup>20</sup> 법 집행 기관이 성별 확인 관리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를 구속하거나 부모가 치료를 허락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의 부모를 체포하면 해당 기관은 법령의 비차별 조항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 **1973년 재활법 제 504조**<sup>21</sup>에서는 성별 불쾌감을 겪는 개인을 포함하여 해당 장애인을 보호합니다.<sup>22</sup> 성별 불쾌감, 성별 불쾌감 진단 또는 성별 불쾌감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자격을 갖춘 개인의 진료 접근을 방지, 제한 또는 방해하는 제한은 제 504조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sup>17</sup> 20 U.S.C. § 1681, *et seq.*

<sup>18</sup> Karlan, note 2 참조, 또한 *Doe v. Snyder*, --- F.4th ---, 2022 WL 711420 도 참조, - \*9 (9th Cir. 2022년 3월 10일), *Grimm*, 972 F.3d at 619

<sup>19</sup> 34 U.S.C. § 10101, *et seq.*

<sup>20</sup> See 34 U.S.C. § 10228(c)(1). Kristen Clarke, 법무차관, Civ. Rts. Div., 미국 법무부, 각서, *Bostock v. Clayton County 길거리 치안법,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 범죄 피해자법, 여성 폭력 방지법* (2022년 3월 10일) 사건 역시 참조, <https://www.justice.gov/crt/page/file/1481776/download>

<sup>21</sup> 29 U.S.C. § 794. 또한, 미국 장애인법 제 2조에서는 연방 재정 지원의 수령에 관계없이 주 및 지방 정부의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과 관련하여 장애 시민권 보호를 확장합니다. 42 U.S.C. § 12132 참조

<sup>22</sup> *Doe v. Penn. Dep't of Corrections*, 제 1:20-cv-00023-SPB-RAL 호, 제 2021 WL 1583556 호 등 참조, - \*12 (W.D. Pa. 2021년 2월 19일), 관련 파트에서 채택된 보고서 및 권고 사항, 2021 WL 1115373(W.D. Pa. 2021년 3월 24일), *Lange v. Houston Cnty.*, 499 F. Supp. 3d 1258, 1270 (M.D. Ga. 2020), *Doe v. Mass. 교장국*, 제 1:17-cv-12255-RGS 호, 제 2018 WL 2994403 호 - \*6 (D. Mass. 2018년 6월 14일), *Blatt v. Cabela's Retail, Inc.*, 제 5:14-CV-04822 호, 제 2017 WL 2178123 호(E.D. Pa. 2017년 5월 18일)

모든 개인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 지원되는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 불법적인 차별에 직면할 염려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많은 차별금지법이 고의적 차별에 대한 일반적 금지에 근거해 보복에 대한 묵시적 소송사유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관들은 이를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sup>23</sup> 따라서, 어떠한 보복 행위도 상기의 보호하에 독립된 법적 청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 \*

어린이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귀하의 지속적인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본 부처는 연방 재정 지원의 수급자인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연방법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부서의 민권국 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risten Clarke  
법무부 차관보  
민권국  
미국 법무부

---

<sup>23</sup> *Jackson v. Birmingham Bd. of Ed.* 참조, 544 U.S. 167, 173(2005) ('성차별을 호소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보복은 의도적인 성차별의 또 다른 형태...'), 보복을 금지하는 기관 규정 24 C.F.R. § 1.7(e) (주택도시개발부), 34 C.F.R. § 100.7(e)(교육부), 38 C.F.R. § 18.7(e)(재향군인부), 및 45 C.F.R. § 80.7(e)(보건복지부) 참조. 기타 관련 규정은 민권국의 제 6 조 법률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v. Rts. Div., 미국 법무부, 제 5 조 법률 매뉴얼, 제 8 조, <https://www.justice.gov/crt/book/file/1364106/download>